「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2. 11. 26. 개정 판 (시행 2012. 10. 1.) → 2006. 2. 28. 제정 판 (시행 2006. 3. 1.)

바뀜 9 · 신설 1 · 삭제 2 · 번호 변경 8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69/compare?from=431&to=418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6:41:29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센터장)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11-26〉	<삭 제>
제4조(신상자료 관리)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를 각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신상자료 관리)**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를 각 부서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 또는 심화되어 유형,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 또는 심화되어 유형,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신청) 1.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부는 중증장애,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을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2. 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수강신청)** ①장애학생이 소속된 학부는 중증장애,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을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강의실 배정)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강의실 위치 및 강의실 좌석을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제6조(강의실 배정)**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강의실 위치 및 강의실 좌석을 우선배치 하도록 한다.
제8조(장애학생 정보 제공)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수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장애학생 정보 제공)**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수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2. 장학금 지급액은 장애등급 1-3급에 한하여 등록금의 30%를	**제8조(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2. 장학금 지급액은 장애등급 1-3급에 한하여 등록금의 30%를

현 행	개 정 안
지급하며 장애등급 4-6급에 한하여는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지급하며 장애등급 4-6급에 한 하여는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제10조(도우미 제도) 도우미 제도는 장애학생들의 요청을 영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학습활동, 사회활동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봉사제도로서, 도우미에게는 장학금 관련규정에 의거한 도우미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봉사단 규정에 의거한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한다.	**제9조(도우미 제도)** 도우미 제도는 장애학생들의 요청을 영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학습활동, 사회활동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봉사제도로서, 도우미에게는 장학금 관련규정에 의거한 도우미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봉사 단 규정에 의거한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한다.
제11조(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동아리 활동)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집기 확충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동아리 활동)**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집기 확충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장애이해 프로그램)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 장애 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이해 프로그램)**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 장애 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개발)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내외 부업, 산업체 현장실습 등 장애학생 진로 및 장애개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개발)**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내외 부업, 산업체 현장실습 등 장애학생 진로 및 장애개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편의시설 확충) 연차별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시설 확충)** 연차별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설치)**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2. 학생지원팀장이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시설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학생서비스센터팀장이 서기가 되며, 간사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③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학생서비스센터 팀장, 학생지원부장, 교무과장, 입학관리부장, 재무실장, 총무과장, 관리과장, 학술정보운영과장, 사회봉사단 연구부장, 대학원 교학부장, 정보전산원 선임팀장, 기획조정실장, 인력개발원부장. ④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⑤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현 행	개 정 안
	있다.
제18조(심의사항)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상담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지원의 개선발전 방안에 관한 주요사항 6.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전반에 걸친 정책 제안사항	**제17조(심의사항)**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상담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지원의 개선발전 방안에 관한 주요사항 6.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전반에 걸친 정책 제안사항
<신 설>	**제18조(회의)** ①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 1.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20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